

2026년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 운영 의정부시 가족센터 센터장 공개채용 공고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의정부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의정부시 가족센터 센터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개요

채용인원		◦ 의정부시 가족센터 센터장(1명)
담당업무		◦ 시설 운영 및 사업 총괄
채용 조건	계약기간	◦ 임명일 ~ 2026.12.31. ※ 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위탁기간 내에서 계약 연장 가능
	급여	◦ 별도 기준에 따름 ※ 성평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급여 수준 책정
	근무장소	◦ 의정부시 가족센터(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5번길 67)
	근무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상근직)
지원 자격	필수사항	◦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요건	☐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가능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그 외 종사자 자격기준: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의함 ※ 해당 분야 자격 기준 미충족 시 임명 취소 ※ 센터장 정년 만 65세

2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기간	2026.1.9.(금) ~ 2026.1.25.(일)	전자우편접수 (담당자 이메일)
1차 서류전형	2026.1.26.(월) ~ 2026.1.27.(화)	모집인원 3배수 이내
2차 면접전형	2026.1.28.(수) ~ 2026.1.30.(금)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안내
최종합격 발표	개별통보	
임명예정일	2026년 2월 이내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구 분	주요 내용
원서접수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양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정양식)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1부 5) 경력증명서(발급일 3개월 이내, 해당자) 1부 6) 기술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7)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채용신체검사서 3) 사회복지시설 채용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별도안내)

※ 위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 (파일명: 지원자 000)

※ 미준수 시 서류 미접수 처리

4

제출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2026.1.9.(금) ~ 2026.1.25.(일) 23:59까지

2)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900009sj@gmail.com)

*제출 기한 및 서식 절대 엄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

- 제35조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 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1차 감독기관인 시군구와 그 지도감독을 받는 기초지자체 관할 사회복지시설 간 업무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조항인 바,
-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시설에 재취업 후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제35조의2의제2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1.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에 명시하고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1. 제39조의17 제1항 각 호에 명시하고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
2.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명시하고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유의사항

- 지원서 제출 양식 미준수, 구비서류 미비 또는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기 제출 서류는 접수 시간 이후 일체 수정이 불가함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입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은 공고 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함.
- 지원서 또는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 경력 조회 등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오는 경우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서류로 제출함
- 보수는 채용 예정자의 경력을 환산하여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임명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